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청석학원(청주대학교)의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 2003. 2.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청석학원(청주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 없는 경우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-	-	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-	-	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1	1,043,582,552	지적사항 없음	
4. 부속병원 관련	해당사항 없음			
계	1	1,043,582,552		

붙임 :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5년 4월 일

학교법인 청석학원

감 사 박 ○ ○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1950호)

감 사 ○ ○ ○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5년 4월 일

학교법인 청석학원

이사장 ○ ○ ○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15년 4월 일

청주대학교

총장 ○ ○ ○ (인)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청주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2012 ~ 2013학년도에 교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1,043,582,552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, 재발방지 및 통제시스템 마련과 손실금액에 대한 회수조치가 필요함	1.관련 부서장의 정기적인 자금현황 모니터링 및 자금인출 통제를 강화하고 회수조치를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최대한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음. 2. 업무관련 관계자 및 책임자의 적절한 조치수행. 3. 학교통장발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기존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.

피 감사 기관장

청 주 대 학 교 총 장 黃信洙 ㊞

(교비회계) (210m/m×297m/m)

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청주대학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청주대학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5. 4. .

학교법인 청석학원

감 사 박원기 (인)

감 사 박승복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국장

성 명 한영호 (인)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교비회계)